

청와대는 4월 14일 농특세로 지원하고 있는 어항건설 품사에 대한 투자 재원의 흐름적 사용을 위해 수산청 남해어항사무소에서 어항건설 현장간 실 이정환 비서관이 주재 담회를 갖고, 부실시공 예방 및 사후관리, 환경 정비 등 현지 실태파악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청와대 농어촌개발비서

漁港 건설 현장 憇談

青瓦臺
주재

**指定港 640곳으로 擴大
이중 519개항 完工키로**

98년까지 2千493億원 投入

21世紀 향한 水產政策 개혁 細部 추진 계획 確定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 井 植
인쇄인 金 在 克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 강남구역 삼동 705-9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드로인 : 1999년 2월 10일

訓會
誠實
創意
奉仕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魚村
建設

水產廳 2004년까지 漁港투자 計劃 마련

부분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어 제반여건이 열악하고
공사기간이 장기 간 소요되며
공사가 수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상의 변화에 심한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
둘째, 석산확보 문제이다.
석재가 어항공사의 주자재이
므로 석산 확보는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석산은 확보의 어려움에서부터
석산까지 여러곳의 공사 현장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여건때
고, 어촌을 1:2:3
업이 공조하는 쾌적
생활공간으로 조성하
진 계획에서 이같이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으로써 어선수용능력을
수산청은 이 세부주진
계획에서 지정하여 항을 확
대하여 항간거리를 줄임
다. 어촌증발개발 등의 중점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
수산청은 이 세부주진
계획에서 지정하여 항을 확
대하여 항간거리를 줄임
다. 어촌증발개발 등의 중점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
수산물가공, 판매시설 등
에 금류, 급수 및 폐수처리
리시설, 제빙냉동시설
에 금류, 급수 및 폐수처리
리시설, 제빙냉동시설
수산물가공, 판매시설 등
어항기능시설을 구비, 건설
항을 중심으로 어촌경관
를 발전시키 나갈 계획이다.
부분 어항공사 현장의
이대부분 협소하여 차
여력을 뿐만아니라 확보 문제 또한
장기 일정 계약을 맺어 비싼 임차료를
있어 와로이 어려울 실정이며 더욱
소음등의 주민 민원
와한 비용 발생과 그
간의 책임 구분의 문제
이란의 생시
소지가 없지 않다.

特殊性 감안한 공사발주

同一港 공사 單一業體서 시공해야

시공與件에 합리적 對處 建設 선진·世界化 이룩

넷째, 작업상의 혼잡문제이다. 도서벽지의 공사현장이 협소하여 자재 적출장 및 제작장의 확보가 매우 어려워 공동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어항공사는 항내에서 여러 선과 함께 대규모 바지선단 및 크레인 등으로 인한 태풍의 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공사로서 작업의 혼잡화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여 2개 이상의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합리한 실정이다.

라고 말했다.
이정환 비서관은 또 어려운 이제 단순한 어항에
쳐서는 안되며 어장에 들어가고 어촌과 어촌계를 고 했다.
소득증대, 낚시터, 유통 시설 등의 기능을 보유하는 어촌종합개발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 고 했다.

는 어황개발사업에 농어
순도로 주택개량사업,
노폐수처리, 하천정비 등
모조사업을 추가하여 지
역종합사업으로 투자효율
의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해 줄

에서는 예산낭비 철저히 배제하고 전 윤활보로 견실한 국반시설 건설에 협조를 것을 당부했다.

특정 업체를 위해 수의 계약을 강요한다면 당연히 일 반 경쟁입찰에 불여야 하겠지만 수의 계약으로 인해 시공 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 가적 이익과 결실시공을 보 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높치 볼 것 없이 소신껏 건설의 선진화와 진정 한 세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방법을 가지고 부 할 것이 아니라 시 공상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방법으로 대처하고 합리적 국가는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논하는 전환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契約제도 등 討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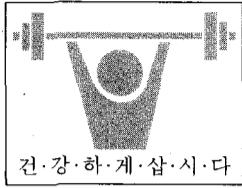
漁港協 6次理事會개최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계약제도에 관해서 협의하고 양으로의 협약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적극 했다.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이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또
잘 먹는다. 그리고 술·담배를
애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가 안
되는 원인이 되다.

대부분의 소화가 안되는 사
람들은 애매모호한 복부불쾌감
·비만·거북증·삼키기 어
려움·때로는 배가 끊임없이 느낌
을 호소한다. 이런 증상의
대부분은 음식과 많으나 관련이
있으며, 소화가 안되는 원인을
보면 위염·파음 및 과식·담
즙증후군·임신·공기를 많이 삼
키는 경우 등등이 있다.

성인의 소화불량은 과음과
약물의 병용에 의한 위염에서
나타난다. 노인환자들은 대부분
복한 쪽에 가까운 소화불량감



속이 더부룩한 증세

우선 식사부터 조절
긴장상태 풀어줘야

을 잘 호소하는 데 이는 다량의 장내 가스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장내세균의 빌효가 증가한 결과이며 장내 가스랑과 복부불쾌감이 비례하지 않는다. 노인환자들의 소화 불량 및 더부를함은 위장관 운동성의 저하와 음식물의 정체, 장내세균증화, 변비의 빈도증 및 운동부족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내 가스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서적으로 긴장하거나 불안한 환자들은 정상적 장운동을 더욱 예민하게 인지하기도 하며 담당진환 및 궤양환자들은 모호한 복부불쾌감 및 팬만감을 주 호소하기도 한다.

각 증상에 대해 살펴보면 트립은 신도 아래쪽의 토와는 달리 구역이 선행하지 않는다. 트립은 신도 불량과 함께 복부불쾌감, 식도 불편증, 식도부병변, 유문부협착, 식도 분비증후군, 식도염, 식도제실, 식도암 때 원인이 되며 소화성 궤양때의 유문부협착, 식도 분비증후군, 인 진장상태의 한 표현으로 불수 있다. 그리고 복부불쾌감 및 팽만감은 식사 후 주로 나타나며 기능적 혹은 소화가 성궤양과 같은 기질병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위의 종양은 위배출 시간을 지연시키며 복부불쾌감이 일어나고 소장·대장·췌장진단으로 소화관에 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시경, 검사와 치료는 우선 식사를 조성제제를 일으키게 되면 식사 후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신경성긴장, 뺨리며는 것, 부작질한 치아, 침울 자주 삼은 위속의 내용물이 역류되

어 엎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구토와는 달리 구역이 선행하지 않는다. 트립은 신도 아래쪽의 내에서 공기량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삼복부팽만감이며 식후 20분 내에 발생한다. 대다수의 성인에서 공기연하증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불수 있다. 그리고 복부불쾌감 및 팽만감은 식사 후 주로 나타나며 기능적 혹은 소화가 성궤양과 같은 기질병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위의 종양은 위배출 시간을 지연시키며 복부불쾌감이 일어나고 소장·대장·췌장진단으로 소화관에 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시경, 검사와 치료는 우선 식사를 조성제제를 일으키게 되면 식사 후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신경성긴장, 뺨리며는 것, 부작질한 치아, 침울 자주 삼은 위속의 내용물이 역류되

5. 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
라서 보증인의 변제등으로 주채
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
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
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 주체무자의 부탁으로 보증
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
다의 출재(出財)로 주체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
에는 출재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주체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주체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체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당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에 주체무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라 가진다.

6. 연대보증

-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체문을 말한다.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보증보험은 1%의 보험료로 각종 보증을 대신

-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다.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연대보증인에게는 앞서 설명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 등을 가지고 있다.

7. 신원보증

- 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다.
 - 신원보증에는 ① 노무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根保證)과 ② 이보다 넓게 노무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하지 않는지를 묻지 않고 노무자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損害擔保契約)과 ③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수(身元引受け)가 있다.

-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하는데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등에 유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신원보증법이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시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계약

어 · 향 · 교 · 실

漁港計劃樹立의 要領

(67)

水產倉庫用地

소량(mg/l) : 축양어의 산소소비량
 k : $(\text{mg}/\text{kg} \cdot \text{h})$
 A : 축양어 수량(kg)
 B : 유기물등의 산소소비량
 (mg/l)
 ν : 단위 시간에 유입되는
 양(l/h)
 V : 수조 용량(l)
 d : 수조 심도(cm)

	수산용수기준	수산환경수질기준
유 기 물 및 영 양 염 류	BOD 5ppm이하(연어과 및 은어과는 3ppm이하)	(1) 하천 a. 자연번식 BOD3ppm이하 (연어, 송어, 은어 2ppm이하) b. 생육조건 BOD 5ppm이하 (연어, 송어, 은어 3ppm이하) c. 어떤 경우도 全鹽 0.1ppm이하 (호소, 인공호수 들어가는 하천 0.05ppm이하) (2) 호수 a. 자연번식 COD 4ppm이하 (연어, 송어, 은어 2ppm이하) b. 생육조건 COD 5ppm이하 (연어, 송어, 은어 3ppm이하) c. 어떤 경우도 全鹽 0.05ppm이하 (3) 해역 a. 일반해역 COD 1ppm이하(난류계 내안 내해역, 무기질 소 1ppm, 무기인 0.05ppm이하) b. 김암식장 COD 2ppm이하
용존산소(DO)	24시간중 16시간이상은 5ppm이상, 이어한 때에도 3ppm이상	(1) 하천, 호수 6ppm이상(연어, 송어, 은어 7ppm 이상) (2) 해역 6ppm이상
PH	담수역 6.5~8.5	(1) 하천, 호수 6.7~7.5 (2) 해역 7.8~8.4
현탁물질(SS)	SS 10ppm 이하	(1) 하천 SS 25ppm 이하 (2) 호수 a. 연어, 송어, 은어, 水色 7이하, 투명도 4.5m이상 b. 온수성어류 수색 12이하, 투명도 1.0m이상, SS 3.0ppm이하
수 오	서식하는 생물에 악영향을 미칠정도로 변화가 없을 것	수족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화가 없을 것
대장균군		1,000/m ³ 이하(생선용 곡 70/100/m ³ 이하)
광유류	0.01ppm이하	수중에 함유되지 않고 수면에 유적이 인지되지 않을 것
유독물질	(1) 순순한 화학성분 Hg 0.004ppm, Cu 0.01ppm, Cd 0.03ppm, Zn 0.1ppm, Pb 0.1ppm, Cr 1.0ppm, CN 0.01ppm, F 1.5ppm, NH4-N 1.0ppm (2) 산업폐수 48hTL _m 값의 1/10이하	
저 질		(1) 하천, 호수 건너상의 발생을 일으키지 않을 것 (2) 해역 건너로서 COD 20mg/g이하, 황화물 0.2mg/g이하, n-헥산 추출물 0.1%이하

8. 보증보험제도

- 보증보험제도는 특수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력(資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제도이다.

- 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치 분등의 보증공탁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각종 할부구매, 신원보증의 경우는 물론 형사사건의 보석보증금 납부 필요시에도 이용된다.

-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공탁보증보험과 보석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인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 현재 보증보험회사는 대한
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한국보증보
험 주식회사가 있다.